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정 2004. 11. 1.)

(전부 개정 2024. 3.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박사학위통합과정)** 「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학과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설치한 학과로 한정하며, 모집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에서 선발한다.

**제3조(학사단위구조개편)** ① 「대학원 학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과를 신설·폐지하거나 대학원 및 학위과정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위원회, 대학원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학원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과를 유예하거나 모집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별로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4조(전공주임교수)** ① 「대학원 학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전공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그 임기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교수 배정 전 학생지도
2.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설강
3. 지도교수 추천
4. 선수과목 결정 및 동일 이수과목 인정
5. 학점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도 및 추천
6. 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
7. 그 밖에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 제2장 입학

**제5조(지원자격)** ① 「대학원 학칙」 제7조제3항의 학위과정별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
  - 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 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출서류)** 「대학원 학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가. 입학원서 1부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

바. 영어권을 제외한 국외 학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 1부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

바.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사. 영어권을 제외한 국외 석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제7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대학원 학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매 학기 시작 2개월 이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에 앞서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형방법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점 및 합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학과가 이론 및 전공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 50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면접시험은 대학(원) 성적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전공에 대한 적성, 인성 및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 의사표현력 및 언어능력 등 4개 항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합격자가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가점수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전형위원은 필기시험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 면접시험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하며, 각 학과에서

추천한 교원을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전형위원은 개별·비공개로 심사해야 한다.

⑤ 대학원장은 지원자의 전형 성적에 따라 순위표를 작성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며,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의 경우 지원자 비율대로 전공별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특별전형)** 「대학원 학칙」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정원외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학부 평균 성적이 3.0/4.5 이상인 사람

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직원

다. 국·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원

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마.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간호사)

바. 전공분야의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기초시·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아. 공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사람

자. 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박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평균성적이 4.0 이상인 사람

나.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다.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국·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마. 기초시·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사.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사람

아. 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원장에게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자는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학점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편입학 전형은 제6조의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준용한다.

②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입학 원서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3.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수료 또는 제적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③ 일반대학원 편입학은 2차 및 3차 학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6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2학점
2. 박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9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8학점

④ 특수대학원 편입학은 3차 학기 이내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료한 사람은 4차 학기 편입을 허가하며 외국어시험은 면제하되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 2차 학기 편입학은 6학점
2. 3차 학기 편입학은 12학점

⑤ 편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과: 1차 학기 종강 후부터 2차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2. 전공변경: 3차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

②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신청 및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2. 전공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3. 성적표

③ 전공변경한 학생이 전공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공통과목에 한정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12조(학점당 등록금)** 「대학원 학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점당 등록금액은 해당학기 수업료를 일반대학원은 9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3조(수료연구생 등록)** ① 「대학원 학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료연구생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수료연구생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 수강, 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 및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2. 수료연구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수료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료연구생은 매 학기 일반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③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해당 연도 재학생 등록금의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수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한다.

④ 수료연구생은 등록한 해당 학기에 본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에 준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⑤ 대학원장은 수료연구생에게 수료연구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료연구생이 그 본분에 어긋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분할납부)** ① 「대학원 학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초과 학기 등록자, 계절수업 등록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한다.

③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④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이 미등록 제적 또는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54조를 따른다.

**제15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학신청서는 매 학기 시작 수업일수 1/3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및 사고는 5주 이상의 진단서
2. 군 입대는 입영명령서 사본
3. 장기 해외 출장 유학은 관련 증빙 서류
4. 임신, 출산, 육아는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빙 서류

③ 다음 각호는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휴학: 군 복무기간
2. 임신, 출산, 육아휴학: 통산 2년 이내

**제16조(복학)** ① 「대학원 학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학신청서는 복학 해당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이수 및 수료

**제17조(강좌개설)**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학기당 개설 강좌는 석사학위과정은 4개 강좌, 박사학위과정은 5개 강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학과(전공)는 석·박사학위과정 통합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해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④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강의담당교수)**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강의담당교수는 교내·외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교내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의담당교수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강의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수업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수강신청)**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강신청은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1.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8학점

2.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 10학점. 다만, 평생교육·다문화교육 전공은 9학점

3.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 9학점

4. 박사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토픽 관련 한국어 교과목 이수자: 12학점

② 수강신청의 추가 및 변경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학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강의담당교수,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신청과목이 1과목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제외되지만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④ 수강과목 중 F학점을 받은 과목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타 전공의 과목은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0조(선수과목)**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학부에 개설된 과목,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② 선수과목은 15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성적이 3.0 미만일 경우 재수강해야 한다.

**제21조(수료학점)** 「대학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및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교원자격증)** ① 「대학원 학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정의 교직과목(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입학연도별 성적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학교현장실습(2학점)은 정해진 실습비를 납부하고 4학기 또는 5학기에 이수해야 한다.

3. 교육봉사는 1학기부터 5학기까지 총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2학점 PASS로 운영한다.

② 그 밖에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기준에 따른다.

**제23조(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중도포기)** 「대학원 학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탈락자나 중도포기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

2.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3. 석사학위논문 심사과정 통과

**제24조(국의유학)** ① 「대학원 학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재학 중에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학신청서, 유학계획서 및 해당 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학기간 중에는 휴학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유학기간 중에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계절수업)** ①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따른 계절수업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운영한다.

② 1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업기간은 6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수강자격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④ 개설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계절수업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 및 강사가 담당할 수 있다.

⑦ 계절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성적평가는 「대학원 학칙」 제28조를 따른다.

⑨ 계절수업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⑩ 계절수업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개강 전: 등록금 전액 반환
2. 개강 후 수업일수 1/3 이내: 등록금의 2/3 반환
3.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내: 등록금의 1/3 반환

⑪ 계절수업의 학점당 등록금 및 등록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⑫ 시간당 강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6조(성적평가)** ① 「대학원 학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학업성적은 과목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강의담당교수의 착오로 학업성적이 잘못 부여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성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③ 학기 중에 군 입대에 따라 휴학한 학생이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한 경우 강의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시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강의담당교수는 학업성적을 정해진 기간에 전산 입력해야 하며, 성적평가 근거자료는 정해진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자격시험

## 제1절 외국어 시험

**제27조(응시자격)** 「대학원 학칙」 제32조에 따른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하고,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1. TOEFL IBT 80점 이상
2. TOEIC 750점 이상
3. TEPS 628점 이상(New TEPS 326점)
4. TOPIK 4급 이상(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5. IELTS 5.5점 이상
6. 영어트랙 입학자 중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

**제28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시기)** 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시기는 학기 중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한국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

② 출제범위는 전공영역과 관계가 있는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31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제32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합격인정)** 합격인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와 관계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제2절 종합시험

**제35조(응시자격)**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따른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한다.

1. 3학기 이상 등록
2.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3. 외국어 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
4.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

**제36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기)** 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시기는 학기 중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에서 3과목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 2과목, 예능계열 학과는 이론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하며, 선교신학대학원은 이론 4과목과 기술시험 1과목으로 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에서 4과목으로 한다.

**제39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제40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전공주임교수가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1조(합격인정)**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재시험)**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볼 수 있다.

##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43조(제출자격)** 「대학원 학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학생
- 나.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
-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마. 수료연구생 등록을 마친 학생

### 2. 박사학위과정

- 가.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학생
- 나.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
-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라.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마. 수료연구생 등록을 마친 학생
- 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실적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 연구실적을 게재한 학생

**제44조(연구실적)** ① 제44조제2호바목의 연구실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연구실적”이라 함은 본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 2. 연구실적의 인정 및 배점은 [별표 3]에 따른다.
- 3. 연구실적 인정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전 5년 이내로 한다.

② 연구실적은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접수기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실적 원본의 복사본, 별쇄본, 게재확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실적 원본의 복사본이나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지도)** ① 논문지도는 3학과와 4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ass(합격) 또는 Fail(불합격)로 평가하여 성적표에 P와 F로 표시한다.

② 학생은 대학원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개 학기 동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원 및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논문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논문제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설정, 논문연구 계획 작성, 논문 완성 등을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전공) 전문가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 중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제47조(작성원칙)** ①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어로 작성하거나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연구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독창적으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연구의 내용이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48조(논문구성)** ① 학위청구논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지(검정색)
2. 속표지(표지규격과 동일)
3. 제출서
4. 인준서
5. 목차
6. 도표 목차(필요한 경우)
7. 본문
8. 부록(필요한 경우)
9. 영문초록(자연계열에 한정하며 본문 앞에 삽입)
10. 인용 및 참고문헌

② 학위청구논문은 본교의 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하며, 논문인쇄는 가로쓰기에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 연 2회로 한다.

**제50조(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정해진 심사료를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원고(박사 5부, 석사 3부)
3.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1부
4. 연구실적조서(박사학위과정에 한함)
5. 졸업연주회 또는 작품발표회 확인서 1부(학과 내규로 정한 예술계열 학과에 한함)
6. 연구윤리 교육 수료증 1부
7. 학위논문이용 허락서 1부

8. 논문표절검사서 1부
9.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1조(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52조(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문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박사학위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2명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4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의 주제, 내용, 체제, 연구성과 등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②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2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일로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5주, 박사학위청구논문은 8주 이내로 한다.

⑤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구술시험)**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에 관해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제56조(심사평가)** 학위청구논문 및 구술시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이 80점(특수대학원 70점) 이상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명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57조(논문심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최종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8조(논문출판)** ① 논문출판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식: 마스터 또는 오프셋 인쇄
2. 규격: 4×6배판 182mm×257mm
3. 지질: 80파운드 이상 백색 모조지
4. 표지: 흑색 하드커버, 금박 인쇄
5. 제본: 크로스 양장과 페이지 바운드

② 출판된 논문은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와 같다.

**제59조(학위청구논문대체)** ① 「대학원 학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생은 작품 발표, 연주회, 프로젝트 보고서, 학점 추가이수 등의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 보고서는 계약학과로 한정하며, 학점 추가이수는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음악학과, 계약학과 및 외국인 유학생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체 학과
  3.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인정하는 학과 및 학생
- ② 학위청구논문대체를 신청하는 학생은 2차 학기 정해진 기간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대체 선택 학생 중 학점 추가이수를 제외한 학생은 제49조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신청서 1부
  2. 졸업연주회 또는 작품발표회 확인서 1부(예술계열에 한함)
  3. 프로젝트 보고서(계약학과에 한함)
- ④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절차는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 학위청구논문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 제7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및 연구과정

### 제1절 공개강좌

**제60조(공개강좌)** ① 「대학원 학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 학기별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매 학기에 3과목(6학점) 이상을 개설한다.
2.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3. 취득한 성적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③ 학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운영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성적은 출석률, 수강태도, 토론참가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학기말에 Pass여부를 결정한다.
3. Pass여부를 학적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④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⑤ 공개강좌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입학)**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은 수학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 초본

② 입학전형은 면접으로 하며, 입학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 및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2조(주임교수)** ① 총장은 공개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수과정 및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3조(수료증서)** 대학원장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2절 위탁교육

**제64조(위탁교육)** ① 「대학원 학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 위탁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민자치대학원” 등의 명칭으로 개설할 수 있다.
2. 강의 장소는 해당기관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인원은 매학기 60명 내외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12주를 강의하며 교과목 단원별로 강의담당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교과목에 따라 대학원 개설강좌와 통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평가한다.

**제65조(입학)** 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해당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도가 높은 사람
3. 해당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으며 수강능력이 있는 사람

②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기관장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3.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③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해당자에 한함)으로 하며, 입학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④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 및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수료증서)** 대학원장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3절 연구과정

**제67조(연구과정)** ① 「대학원 학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연구과정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 연구과정의 개설 및 운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연구생은 학기당 3과목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③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제68조(입학)** ① 입학자격은 및 입학시기, 제출서류는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②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전형과 구두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 및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실적증명)** 대학원장은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장 장학금

**제70조(장학금 종류)** ① 장학금은 교비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가 및 공공단체, 장학재단,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조교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신앙·공헌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산학협동장학금, 재단장학금, 기타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7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수업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수업료 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20명 이내로 한다.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학생: 첫 학기 수업료의 40%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공공기관 재직학생: 첫 학기 수업료의 30%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학생: 수업료의 30%

라. 기초생활수급학생 및 차상위학생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 수업료의 30%

###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 수업료의 30%

나. 계열별 성적 우수 학생: 수업료의 30%

다. 교수연구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학생: 수업료의 30%

###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및 일반직원: 수업료의 40%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학생: 첫 학기 수업료의 40%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학생: 수업료의 30%

라. 공무원, 공사, 일반 기업체 및 사립학교 재직자,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재직자,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 본교 재학생의 직계가족, 개인사업자, 그 밖에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의 30%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교육 대상자로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수업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최소 수업연한 기간에만 적용되며,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학과에서 요청 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교외장학금은 학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⑤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가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72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장학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장학생 배정 및 선정
3. 장학생 자격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장학금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특수대학원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각 대학원의 종전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호 및 제189조제2호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4조 및 제82조의 대체의학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및 제189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학년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2>**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82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7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7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제12조, 제25조, 제47조는 이 세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제159조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7장(졸업시험)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 전의 제83조제4항은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학년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14.>**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3.29.>**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8.31.>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5.>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7호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구 분 대학원별		적용 년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계속	24			24	
	박사학위과정	계속	36			36	
경영행정대학원		계속	24			24	
교육대학원		계속	4	14	6	24	
문화산업대학원		계속	24			24	
선교신학대학원		계속	4	20		24	
상담심리대학원		계속	24			24	
보건복지대학원		계속	24			24	

- ※ 본교의 대학원 타 학과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는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중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 선교신학대학원은 전공영역에서 과목 10학점(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2018학번 이전(2017학번까지)의 학생이 공통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 일반대학원의 교과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정해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정해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년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 ※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전공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구분 없이 수료학점 범위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설치 기준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비고
일반대학원	·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전임교원 강의 비율 60% 이상 · 참여 교원의 1/2 이상이 학과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이 인문·사회계열은 320% 이상, 자연·공학계열은 480% 이상, 예·체능계열은 240% 이상	· 연구실적은 「교원 연구업적 평가규정」에 따름
특수대학원	·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별표 3]

## 박사학위과정 연구실적물 분야별 배점표

학술논문게재 분야

순	구 분	배점	점수표								비고
			1인		2인		3인		4인이상		
			교신/ 1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교신/ 1저자	공동 저자		
1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SCIE, A&HCI)	240	240	160	80	120	60	90	50		
2	국제전문학술지(SCOPUS)	180	180	120	60	90	50	70	40		
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20	120	80	40	60	30	50	30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90	90	60	30	50	30	40	20		
5	국외학술지	90	90	60	30	50	20	35	19		
6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인정학술지, 의치약학계열(임상포함) 전국규모학술지(증례보고 포함)	80	80	50	25	40	20	35	16		
7	지방 또는 지역학술지	60	60	40	20	30	15	25	12		
8	본 대학 부설연구기관 학술지	60	60	40	20	30	15	24	12		
9	기타 논문(심사제도가 정립된 논문집, 8항 이외의 대학논문집, 기념논문집포함)	30	30	20	10	15	10	12	5		

- 저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준함
- 인문사회계열과 예능계열은 점수표에서 20%를 가산함
- 공동저자 중 지도교수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함

□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평가영역	배점	평가항목기준
건축계획 및 설계		1. 국제적 수준 실적물 <sup>1)</sup> (SCI(E)급수준)
	240	가.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 <sup>2)</sup> 을 수상한 작품
	240	나. 국제 저명 건축전문지 <sup>3)</sup> 에 각종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작품
	240	다. 공인된 국제설계 경기 <sup>4)</sup> 당선작 또는 최우수상 입상작품(장려상이상)
		2. 국내 전국규모수준 실적물 (A등급 논문수준)
	180	가. 국내 설계경기 <sup>5)</sup> 당선작 또는 최우수상 입상작품(장려상 이상)
	120	나. 국제 저명 건축전문지 <sup>6)</sup> 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작품
	120	다. 전국규모 수준의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sup>7)</sup>
	100	라. 시공된 건축물
		3. 작품전시회 / 발표 외 <sup>8)</sup>
	100	가. 초대 작가전
	60	나. 단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기준 : 논문업적 비율 (20% 이상), 실기실적 비율(80% 이하)</li> <li>■ 한 작품의 실기실적을 중복하여 연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기재 시 높은 점수를 반영함</li> <li>■ 외부 건축설계사와 공동 작품시 건축설계사는 참가인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li> <li>■ 공동작품의 경우는 학술논문게재 분야의 점수표를 준용함</li> </ul>

- 1) 설계업적물(작품, 수상 등)의 인정환산율은 설계인원에 따라 학술논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 2)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은 PA AWard[미], AIA Gold Medal, AR +D Awards, Pritzker Architecture Prie 등 이와 동등한 건축 상을 말한다.
- 3) 국제 저명 건축전문지는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이상 미국),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s Journal(이상 영국), A+U, JA, 신건축, 건축문화(이상 일본), AA(L' architecture d' aujourd'hui), Techniques & Architecture, A.M.C(이상 프랑스), Domus(이상 이탈리아), Space(이상 대한민국) 등 이에 동등한 수준의 잡지를 말한다.
- 4) 공인된 국제설계경기는 공인된 국제건축단체(UIA) 각 국가건축단체, 문화단체, 국가기관{광역시, 도 포함} 등 국제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거나 승인받은 국제규모의 건축공모전 또는 현상설계를 말한다.
- 5) 국내 설계경기는 국가건축단체, 문화단체, 국가기관{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등 공인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거나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건축공모전 또는 현상 설계를 말한다.
- 6) 국내 저명 건축전문지는 건축과 환경, 포아르, 건축문화, 플러스, 인테리어, 건축사, Concept, Archiworld 등 이에 동등한 수준의 잡지를 말한다.
- 7) 국내 전국규모 수준의 권위를 가진 상은 광역시, 도 이상의 공동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해당 문화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작품{건축학회상, 건축사협회상, 새 건축사협회상, 건축문화대상{건축사협회 주최}, 김수근 건축 상 등}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건축 상을 말한다.
- 8) 작품전시회/발표회는 문예진흥원, 미술관, 문화회관, 아트센터, 화랑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말한다. 단체나 기관, 학원, 협회는 국가 공인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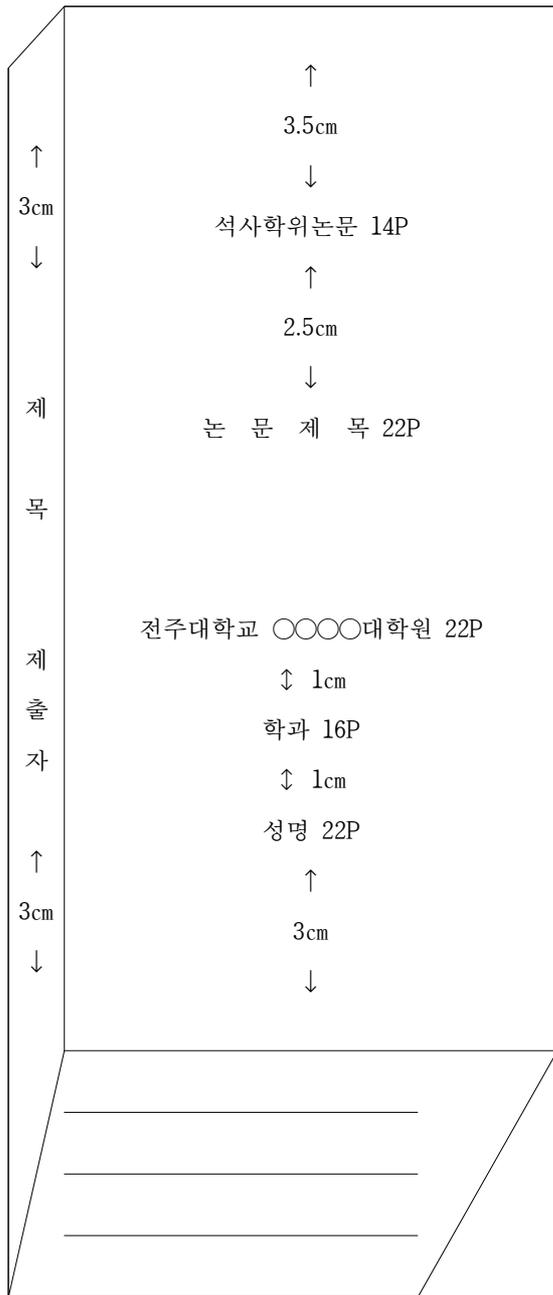
□ 예·체능분야(체육)

평가영역	배점	평가항목기준
체육		<b>1. 국제전 또는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대회</b>
	60	가. 올림픽 경기출전
	60	나. 외국에서 개최하는 공인된 국제대회 입상
	50	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공인된 국제대회 입상
	40	라. 전국규모의 공인된 국내대회 입상
		<b>2. 국내외 심판위원</b>
	100	가. 외국에서 개최하는 공인된 국제대회
	70	나. 국내에서 개최하는 공인된 국제대회
	50	다. 전국규모의 공인된 국내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적중 동일대회에서 중복하여 발표되는 실적들은 가장 우수한 실적 하나만 인정</li> <li>■ 예·체능 분야의 실기 연구실적은 도록, CD, MD, 녹음, 녹화Tape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함</li> <li>■ 국내외 도시의 공인된 장소 : 국내는 광역시 이상의 도시, 국외는 국내의 광역시 에 준하는 도시</li> <li>■ 지도자는 제1호를 준용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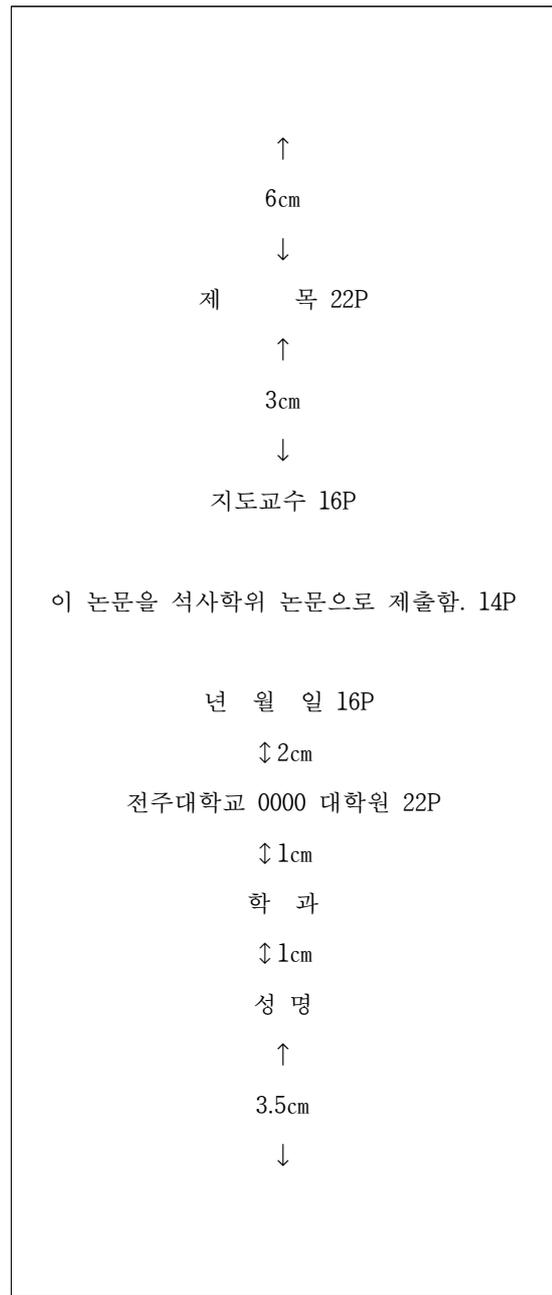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표지양식의 예



### 속표지의 양식



## 인준서 양식의 예

	↑				
	4cm				
	↓				
←4.5cm→	○○○의 석사학위	논문	을	인준	←4.5cm→
	↑				
	4.5cm				
	↓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7cm →	년	월	일	← 7cm →	
	↑				
	1.5cm				
	↓				
← 5cm →	전주대학교	○○○○	대학원	← 5cm →	
	↑				
	3cm				

